두루초등학교 도서 구입 특수조건

제1조 적용

이 조건은 두루초등학교(이하 "갑"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이하 "을"이라 한다) 사이에 이루어지는 도서 구매계약에 적용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도서 납품 및 검수

가. 두루초등학교 도서관으로 납품한다.

나. **납품 일시는 검수자와 사전에 전화로 협의 후 납품한다. (044-903-2758)**

다. 자료납품은 주문자료 목록 번호순(등록번호순)으로 하며 등록원부와 주문자료 목록으로 동시에 검수한다.

라. 모든 납품도서는 도서목록사항의 출판사항과 동일한 것으로 가장 최근 발간된 최신판으로 납품한다.

마. 납품하는 도서에 대해 **납품도서는 본교의 도서관리프로그램(DLS)에** 의한 **DATA 입력 작업(모든 서지사항 입력: 도서명, 저자, 가격, 출판사, 주제어, ISBN, 청구기호, 별치기호 등) 및 장비작업(도서입력 및 분류, 바코드작업, 청구기호·색띠 라벨 부착, 장서인 및 측인 날인 작업), 딸림자료(책과 함께 들어오는 부가 CD 자료 등) 등록(부착되어 있는 책과 마찬가지로 딸림 자료도 등록), 서가에 도서 배치**까지 마무리하여 납품하는 조건이다. **자료 등록 및 정리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서관 담당자와 사전 협의한다.**

※ 도서의 라벨 작업 비용은 별도 계약을 통해 처리할 것임

바. **납품 완료는 납품한 도서를 DLS에 등록 후 3단 바코드 및 색띠 라벨 작업, 장서인(표제지), 측인(측면)의 작업을 하여 납품이 확인될 때 완료된 것으로 본다.**

사. 도서 현품은 출판사에서 출고한 원형대로 납품하되, 납품 도서에 포함된 별책부록, 별책 미디어 등은 목록상에 언급되지 않더라도 가격에 포함된 경우에는 반드시 함께 납품되어야 한다.

아. "을"은 구입대상 물품을 납품함에 있어 당초 발주 순서와 일치되게 맞추어 "갑"이 요구하는 일시 및 장소에 비치한 후 "갑"의 사서교사와 함께 검사 및 검수를 하고 인계함으로써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보며, 세부적인 사항은 본교 사서교사와 사전 협의한다.(택배 등 제3자 납품 불가)

자. 인쇄, 제본 상태가 바르지 못한 도서는 동일 도서로 즉시 교환한다.

차. 장비 작업 시 필요한 모든 작업 재료는 반드시 계약상대자가 구입하여 작업한다. (각종 라벨, 라벨 키퍼, 등록번호 바코드, 부록자료 정리 케이스 등)

제3조 납품기한

구입 물품의 납품일은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이행지체 시 매 일수마다 지체상금(1000분의 1.5)을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입수, DLS 등록 및 장비작업이 완료되어 먼저 준비된 도서를 우선적으로 부분 납품 후 순차적으로 도서 전체를 납품하여야 한다.

제4조 납품율

가. 자료목록 중 발행 중지(절판), 품절 등으로 납품이 불가한 자료에 대해서는 타당한 근거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사실을 "갑"의 사서교사에게 미리 알려 협의 후, 대가 지급 시 낙찰율을 적용하여 정산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본교의 승인을 얻어 지정해 주는 자료로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 절판 또는 품절도서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당 출판사 또는 도서 도매유통점(대형서점) 2개소 이상의 절판 또는 품절 확인을 받은 품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납품은 발주한 자료의 100%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단, 출판사의 도산 등으로 본교에서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요구 수량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본교의 승인을 얻어 지정해 주는 자료로 대체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요구한 자료의 90% 이상을 납품하여야 한다.

제5조 파본도서의 교환

가. 구입 자료 중 검수 시 파본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교환을 원칙으로 하며, 납품된 자료라도 정리 후 1년 이내 발견된 자료에 대하여는 납품자가 반드시 정품으로 교환해주어야 한다. (단, 파본 자료가 절판시에는 정가에 해당하는 자료 중 본교에서 요구하는 자료로 교환해주어야 한다.)

나. 납품되는 모든 자료에 대해 저작권법에 위배되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납품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제6조 계약금액의 조정

가. 최종 계약 금액은 "을"이 납품 완료한 자료에 대하여는 낙찰율에 의한 대가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나. 계약된 목록 중 품절 또는 절판된 자료에 대해서는 금액 지급시 이를 감하거나 본교에서 요구하는 자료로 대체 납품할 수 있다.

제7조 해약조건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기한을 지연 또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나. 납품된 물품이 주문자료목록과 상이 또는 정당한 납품 요구에 불응한 경우

다.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8조 기타사항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에 결정하며, 협의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공급자”는 납품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수요자”의 의사를 수용한다.